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이 예금거래 기본약관(이하 ‘이 약관’이라 한다)은 우체국과 예금주가 서로 믿음을 바탕으로 예금거래를 빠르고 틀림없이 처리하는 한편, 서로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다. 우체국은 이 약관을 창구에 놓아두고, 예금주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이 약관을 볼 수 있고 또한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1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거치식예금, 적립식예금 거래에 적용한다.

제2조 【실명거래】

- ① 예금주는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한다.
- ② 우체국은 예금주의 실명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예금주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 【거래장소】

예금주는 예금계좌를 개설한 우체국 창구(이하 ‘개설 우체국’이라 한다)에서 모든 예금거래를 한다. 다만, 우체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우체국 창구나 다른 금

유품관 또는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 컴퓨터, 전화기 등(이하 ‘전산통신기기’ 라 한다)을 통하여 거래할 수 있다.

제4조 【거래방법】 예금주는 우체국에서 내준 통장(증서·전자통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표·어음용지로 거래하여야 한다. 그러나 입금할 때, 자동이체약정·전산통신기기이용약정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 및 기등록된 생체정보(이하 “바이오정보”), 실명확인증표 등을 통해 본인확인된 경우에는 통장 없이(이하 “무통장”)도 거래할 수 있다.

제5조 【인감과 비밀번호 등의 신고】

① 예금주는 거래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대리인명, 주소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입력기(이하 ‘Pin-Pad 기’ 라 한다)에 의하여 예금주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예금주가 우체국에 내국할 수 없는 경우 예금주는 개설된 예금의 첫거래 전에 우체국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거치식·적립식 예금은 비밀번호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예금주는 인감과 서명을 함께 신고하거나 인감 또는

서명을 추가로 신고할 수 있다.

④ 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우체국은 거래처로부터 인감 또는 서명의 신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입 금】

① 예금주는 현금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하는 수표·증서 (이하 ‘증권’ 이라 한다)로 입금할 수 있다.

② 예금주는 현금이나 증권 등으로 계좌송금(예금주가 개설우체국 이외에서 자기계좌에 입금하거나, 제3자가 개설우체국 또는 다른 우체국이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예금주 계좌에 입금하는 것)하거나, 계좌이체(예금주의 신청에 따라 우체국이 특정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우체국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다른 계좌에 입금하는 것)를 할 수 있다.

③ 증권으로 입금할 때 입금인은 증권의 백지보충이나 배서 또는 영수기명날인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우체국은 백지보충 등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④ 입금하는 증권이 수표일 때 우체국은 소정의 금액란에 적힌 금액으로 처리한다.

제7조 【예금이 되는 시기】

① 제6조에 따라 입금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예금이 된다.

1. 현금으로 입금한 경우 : 우체국이 이를 받아 확인

한 때

2. 현금으로 계좌송금하거나 계좌 이체한 경우 : 예금원장에 입금기록이 된 때

3. 증권으로 입금하거나 계좌송금한 경우 : 우체국이 그 증권을 교환에 돌려 부도반환시한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한 때. 다만, 우체국에서 즉시 지급하여야 할 증권의 경우 결제를 확인한 때

② 제1항 제3호에 불구하고 증권이 자기앞수표이고 지급제시 기간 안에 사고신고가 없으며 결제될 것이 틀림없음을 우체국이 확인한 경우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 예금이 된다.

③ 우체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 및 제2항의 확인 또는 입금기록을 신속히 하여야 한다.

제8조 【증권의 부도】

① 제6조 제1항에 따라 입금한 증권이 지급거절되었을 때는 우체국은 그 금액을 예금원장에서 뺀 뒤 예금주(무통장입금일 때에는 입금의뢰인)가 신고한 연락처로 그 사실을 알린다. 다만, 통화불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우체국은 지급 거절된 증권을 그 권리보전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입금한 우체국에서 예금주(무통장 입금일 때에는 입금 의뢰인)가 반환 청구할 때 돌려준다. 다만, 증권발행인이 지급 거절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을 입금

한 예금계좌에 해당자금을 현금이나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증권으로 입금하였을 때는 발행인에게 돌려 줄 수 있다.

제9조 【이 자】

① 이자는 10원을 단위로(10원미만 절사) 약정한 예치기간 또는 제7조에 따라 예금이 된 날(자기앞수표·가계수표는 입금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한 이율로 셈한다.

② 우체국은 예금종류별 이율표를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게시하고, 이율을 바꾼 때는 그 바꾼 내용을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율을 바꾼 때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바뀐 날로부터 바뀐 이율을 적용하며, 거치식·적립식예금은 계약 당시의 이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예금은 이율을 바뀐 날로부터 바뀐 이율을 적용한다.

④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거치식·적립식 예금은 최초 거래시 이율적용 방법을 **통장, 전산통신기기 등으로 표시하며**, 또한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적립식예금은 이율을 바꾼 때 마다 바뀐 이율을 **통장에 기록하거나 전산통신기기 등으로 안내한다.**

⑤ 예금주가 실제 받는 이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이

자에서 소득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이다.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국고귀속】

① 우체국은 예금이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예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하 “휴면예금”이라 한다)으로 본다.

1.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 거래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예금
2. 거치식, 적립식 예금은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예금

② 제1항에 따른 휴면예금은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국고귀속 될 수 있으며, 원권리자는 국고귀속된 휴면예금을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급청구할 수 있다.

③ 예금계약은 예금이 제1항 각호에 따라 휴면예금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자동 종료하며, 해당 계좌는 더 이상 이용이 불가하다. 잔액이 0원으로 된 예금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도 같다.

제10조 【지급·해지청구】

① 예금주가 통장으로 예금·이자를 찾거나 예금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한 비밀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거나 PIN-Pad기에 입력하고, 거래 인감을 날인

하거나 서명감과 일치하게 서명한 지급 또는 해지 청구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예금주가 Pin-Pad기에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지급 또는 해지청구서에 비밀번호의 기재 생략할 수 있다.

② 예금주가 무통장으로 거래하고 실명확인증표 등에 의해 본인확인된 경우, 우체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예금주가 자동이체 · 전산통신기기 · 바이오정보 등을 이용하여 찾을 때는 그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1조 【고객확인 및 검증】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체국은 고객확인 및 검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고객이 이를 거부하거나 확인 ·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요청한 금융거래를 거절하거나 종료하여야 한다.

1. 개인

항목	정보	자료
신원정보	성명, 실명번호, 국적, 주소(거소), 연락처 등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행정정보문서(주민등록등본 등)
직장정보	직장명, 업종, 직장주소 등	직장정보 문서(재직증명서 등)
추가정보	거래목적, 자금원천, 재산현황 등	추가정보 확인이 가능한 자료 (부동산계약서, 공과금 고지서 등)

※ 실제소유자가 다른 경우 추가 서류 요구될 수 있다.

2. 법인(단체)

항목	정보	자료
신원정보	법인(단체)명, 실명번호, 주소, 연락처, 대표자 정보, 업종, 설립목적, 실제소유자(주주 및 임원) 정보 등	실명확인증표(사업자등록증 등), 대표자 신원정보문서, 법인(단체) 확인문서(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정관, 주주명부 등)
추가정보	회사 경영정보, 거래목적, 자금원천 등	기타 추가정보 확인이 가능한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각종 인허가서 등)

②『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우체국에 가상자산사업자임을 고지하여야 하며, 고지하지 않아 고객확인 및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금융거래가 거절되거나 중

료된다.

③『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 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거래 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 UN에서 지정하는 제재대상자, 국제사회 또는 해외지점 소재 국가의 정부에서 발표한 금융거래제한 대상자에 대하여는 금융거래가 제한되거나 거절된다.

제12조【지급시기】

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예금주가 찾을 때에 지급한다.

② 거치식·적립식예금은 만기일이 지난 다음 예금주가 찾을 때 지급한다.

제13조【양도 및 질권설정】

① 예금주가 예금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 하려면 사전에 우체국에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으로 금지되는 경우에는 양도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다.

②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질권설정 할 수 없다.

제14조【사고·변경사항 신고】

① 예금주는 통장·도장·카드 또는 증권이나 그 용지를 분실·도난·멸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우체국에 즉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할 때에는 영업 시간 중에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다음 영업일 안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예금주가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대리인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신고사항을 바꿀 때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서면신고없이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바꿀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 우체국이 정한 요건이 맞으면 우체국은 새로운 비밀번호로 변경처리한다.**

③ 예금주는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일부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우체국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는 우체국이 이를 접수한 뒤 전산 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걸리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기며 전산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하지 못한 때에는 복구 등 사유해제 시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신고를 철회한 때는 예금주 본인이 서면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으로 하여야 한다.

제15조 【통장, 카드의 재발급 등】

제13조에 따라 통장·도장·카드에 대한 사고신고가 있을 때에는 우체국은 신고인이 예금주 본인임을 확인하는 등 필

요한 조치를 마친 뒤에 재발급하거나 지급한다.

제16조【통지방법 및 효력】

① 우체국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예금주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전화에 의한 통보시 통화자가 예금주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우체국의 통지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예금주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예금주에게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②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사항을** 서면 또는 E-mail로 통지할 때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③ 우체국은 예금계약의 임의해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통지가 예금주에게 도달되어야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다만, 관계법령 또는 어음교환업무규약 등에 의하여 예금계약을 해지한 경우나 예금주가 제13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하여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면책】

① 우체국은 예금지급청구서·증권 또는 신고서 등에 찍힌 인영(또는 서명)을 신고한 인감(또는 서명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예금지급청구서 등에 적힌 비밀번호나 Pin-Pad 기를 이용하여 입력된 비밀번호가 신고한 것과 동일하여 예금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예금주가 요구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그 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예금주에게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우체국이 예금주의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전산통신기기 등을 이용하거나 거래정보 등의 제공 및 금융거래명세 등의 통보와 관련하여 우체국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가 새어나가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우체국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우체국이 거래처의 실명확인증표 등으로 주의 깊게 본인확인하여 예금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예금주가 요구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위조·변조 또는 도용이나 그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우체국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우체국은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

④ 우체국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주의 깊게 실명확인하거나 실명전환한 계좌는 예금주가 실명확인증

표 또는 서류의 위조·변조·도용 등을 한 경우, 이로 인하여 예금주에 손해가 생겨도 우체국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예금주가 제13조제1항, 제2항, 제4항의 신고나 절차를 미루어 생긴 손해에 대해 우체국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우체국은 예금주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제18조 【수수료】

① 예금주가 개설 우체국이 아닌 다른 우체국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을 통해 거래할 때 우체국은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외에도 예금주가 자기앞수표 발행 등을 원하거나 예금주 잘못으로 통장 재발행 등을 요청하는 경우 그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과 관련한 수수료표는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19조 【오류처리 등】

① 우체국이 예금원장이나 통장거래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하였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바르게 고치고 그 사실을 예금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예금주는 거래를 마친 때 그 내용이 맞는가를 확인

하고,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에는 바르게 고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우체국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바르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 【예금의 비밀보장】

① 우체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금주의 거래내용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남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② 우체국은 예금주가 전산통신기기 등으로 무통장입금(송금 포함) 및 예금잔액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명의인·계좌번호·비밀번호(자동응답서비스(ARS)는 계좌번호·비밀번호)가 맞으면 그 요청자를 본인으로 여겨 입금(송금)을 하고 입금인, 입금액, 예금잔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금융거래 정보누설 등으로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1조 【약관변경】

① 우체국이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이하 총칭하여 본조에서 “약관등”이라 한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되는 약관등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우체국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예금주에게 알린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등을 즉시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1. 법령의 개정, 제도의 개선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약관변경권고(명령)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등을 변경한 경우
2. 약관등의 개정이 예금주에 유리한 경우
3. 변경 전 내용이 기존 예금주에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4. 기존 약관등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문구 변경의 경우

② 약관등을 변경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게시와는 별도로 변경되는 약관등의 시행일 1개월 전에 예금주에 변경내용(신·구조문대비표 포함)을 다음 각 호 중 1개(예금주에 불리한 변경인 경우에는 3개) 이상의 방법으로 알리되,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전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예금주에게 알린다.

1. 예금주가 신고한 정보에 따른 우편 또는 E-mail에 의한 통지
2. 예금주가 신고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MMS) 또는 이에 준하는 예금주가 사전 동의한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한 통지
3. 예금주와 약정한 별도의 전자기기(애플워치 등)에 의

한 통지

4. 거래통장에 표기

5. 현금자동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설치장소에 게시
(이 경우 큰 문자를 사용하고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한다)

6.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 초기화면에 게시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오탈자나 자구 수정 등 단순한 문구 변경인 경우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예금
주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의 게시일 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게시 또는 통지한다.

⑤ 제4항의 게시일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으면 거래처
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22조 【약관적용의 순서】

① 우체국과 예금주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약관 조항과 다를 때는 그 합의사항을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금약관에서 정한 사항이 다를 때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이나 거치식·적립식 예금약관을 먼저 적용한다.

제23조【기 타】

이 약관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금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따로 약정이 없으면 관계법령·어음교환업무규약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업무처리 방법을 적용한다.

제24조【이의 제기】

예금주가 우체국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분쟁처리기구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5조【위법계약의 해지】

금융소비자는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 제32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특약은 2021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특약은 2026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